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4. 1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2. 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3. 2. 21.

다. 상정일자 :

- 1차 : 제9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3. 2. 22)
 상정, 심사, 보류
- 2차 : 제9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3. 4. 11)
 상정, 심사,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태규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주요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조직운영과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과 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규정함.(안 제2조)

- 가)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 나) 사회복지 및 주민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 다) 청소년 선도 및 교육에 관한 봉사활동
 - 라) 교통·기초질서 계도 및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마)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 바)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사)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 2)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가)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다)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 라)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 3) 자원봉사센터는 구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되,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4) 구청장이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5) 자원봉사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6)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가)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 나)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다)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 라)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또는 시상금 등을 받은 경우
- 7).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또는 소요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8)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9)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사무 일부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보되, 권한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법(2000.12.18 법률 제6801호)제9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과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자원봉사 관련 주요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조직운영과 활동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비용지원과 자원봉사자의 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나열된 각 호의 활동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 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안 제5조에서 센터는 구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되,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7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가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나 사업추진 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상황을 자원봉사자 수첩 등에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격려·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선자치 출범 후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개발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담 부서의 설치와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통하여 관련 업무를 육성·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이중 동작구와 서초구 등 4개 구에서는 민간위탁 형태로, 기타 구에서는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마포구는 1998년 11월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나 인력과 재정의 열악성 등으로 인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관리가 어려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

- 향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의 참여증진 방안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에 보완하는 동시에 봉사활동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협력체계 강구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인력과 예산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종전에는 조례없이도 자원봉사활동체제가 잘 유지되었는데 조례제정 사유는?
- 답변요지(박재성 자원봉사팀장) : 자원봉사자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 입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조례제정을 급히 서두른 이유는 지침이 하달되어서인가?
- 답변요지(박재성 자원봉사팀장) : 지침이 하달된 것은 없음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봉사활동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방법은?
- 답변요지(박재성 자원봉사팀장) : 홈페이지로 활동실적을 관리할 예정이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20개단체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기 위해 모임을 가질 예정임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자원봉사라 함은 말 그대로 아무 댓가없이 봉사하는 것인데 실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 답변요지(박재성 자원봉사팀장) : 타구시례를 보면 5천원 전용티켓, 0민원이하 상봉권을 제공하는 정도임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도우미제도를 없앴다는데 어떤 도우미인가?
- 답변요지(박재성 자원봉사팀장) : 유급 도우미임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지하철 티켓등을 제공하면서 관주도로 이제도를 운영하면 발전 가능성은?
- 답변요지(박재성 자원봉사팀장) : 장래를 보고 연구한 대상임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현재의 자원봉사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자칫 잘못하면 자원봉사센터 관리가 부실해질 염려가 있음.
우리구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보람있는 일을 했다하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람.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장) : 학생들의 경우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없고 또 가더라도 청소 등 허드렛일만 시키고 있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단체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시로 오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게 현실임. 이 자원봉사체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3. 4.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주요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조직운영과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과 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규정함.(안 제2조)

- (1)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 (2) 사회복지 및 주민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 (3) 청소년 선도 및 교육에 관한 봉사활동
- (4) 교통·기초질서 계도 및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5)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 (6)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7)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사

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1) 자원봉사자의 모집 ·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 (4)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5)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다. 자원봉사센터는 구에서 직접 관리 · 운영하되,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이 센터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자원봉사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가 다음에 해당 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1)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3)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또는 시상금 등을 받은 경우

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물품 또는 소요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아.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자.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사무 일부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보되, 권한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제정근거

사회복지사업법(2000. 1.12. 법률제6160호) 제9조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2003년도 예산에 22,700천원 반영
- 나.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 : 기획예산과와 협의 완료함.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03. 1.20 ~ 2. 9)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 나. 사회복지 및 주민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 다. 청소년 선도 및 교육에 관한 봉사활동
 - 라. 교통·기초질서 제도 및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마.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 바.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사.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마포구자원봉사센터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센터의 위치는 구청장이 구보에 고시한다.

제5조(운영 및 비용지원 등) ① 센터는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제9조(실비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또는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0조(자원봉사활동 진흥)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상황을 자원봉사자수첩 등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격려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일정기간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권한위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제7조 및 제9조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사무 일부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보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처리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